

第269回國會  
(定期會)

#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1 號

國會事務處

2007年11月23日(金) 午後 2時

## 議事日程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3.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4.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
5.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
10.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1.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인신보호법안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
2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25. 資産流動化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 관한法律 폐지법률안
28.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 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29.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률안
30.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清算財産處理에 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31.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屋外廣告物等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0.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2.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군인복지기본법안
56. 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6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64.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
65.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66.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附議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
-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5
- 2.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문석호·안영근·염동연·유인태·강혜숙·김현미·정청래·서재관·신학용·양승조·전병헌·최철국·김교홍·박기춘·장경수·노웅래·이경숙·이은영·이근식·민병두·이상민·임종인·노회찬·박세환·나경원·유재건·장복심·송영길·우제창·이미경 의원 발의) ..... 5
- 3.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 4.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 5.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5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5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7
8.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7
9.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10.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7
11.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7
12. 인신보호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고경화 · 고진화 · 광성문 · 김영춘 · 김원웅 · 김정훈 · 김태년 · 김태환 · 김희정 · 박세환 · 박순자 · 박재완 · 박진 · 박창달 · 서재관 · 손봉숙 · 신학용 · 안상수 · 안택수 · 양형일 · 엄호성 · 오제세 · 우제창 · 유기준 · 유정복 · 윤건영 · 이계경 · 이계진 · 이규택 · 이근식 · 이상경 · 이상득 · 이상열 · 이윤성 · 이해봉 · 이혜훈 · 임태희 · 장윤석 · 전여옥 · 정두언 · 정병국 · 정종복 · 정화원 · 진영 · 최경환 · 최구식 · 홍준표 · 황우여 의원 발의) ..... 7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 · 김현미 · 노웅래 · 박찬석 · 이상경 · 이상민 · 이인영 · 강창일 · 정청래 · 제종길 · 조정식 의원 발의) ..... 10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0
15.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엄호성 · 박세환 · 박재완 · 주호영 · 임태희 · 이명규 · 배일도 · 김정훈 · 정두언 · 김명주 · 장윤석 · 강길부 · 김재경 · 황우여 · 이계경 · 유승민 의원 발의) ..... 10
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 · 배기선 · 이화영 · 이인영 · 박영선 · 김우남 · 한광원 · 노영민 · 홍미영 · 김춘진 · 이영호 · 이상경 · 조성래 · 박찬석 · 장향숙 · 우원식 · 정봉주 · 조정태 · 최규성 의원 발의) ..... 10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0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2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2
2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2
2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2
2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2
2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2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2
25.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 · 박재완 · 유기준 · 유승민 · 고진화 · 배일도 · 이계경 · 엄호성 · 정문헌 · 김정훈 · 최경환 의원 발의) ..... 12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이종걸 · 이광철 · 송영길 · 김태년 · 변재일 · 이미경 · 박상돈 · 고희선 · 강길부 의원 발의) ..... 12
27.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주호 · 진수희 · 한선교 의원 발의) ..... 12
28.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군현 · 한선교 의원 발의) ..... 12
29.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광성문 · 권철현 김석준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인기 · 이주호 · 진수희 의원 발의) ..... 12
30.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清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 · 이성권 · 광성문 · 차명진 · 이주호 · 한선교 · 최구식 · 엄호성 · 이재오 · 박형준 의원 발의) ..... 12
3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희 의원 대표발의)(이용희 ·

	강창일 · 박기춘 · 조성래 · 정진석 · 김춘진 · 이시중 · 김동철 · 윤원호 · 김선미 · 홍재형 · 선병렬 · 양승조 · 최규식 · 양형일 의원 발의) .....	16
32.	屋外廣告物等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16
33.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16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16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3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37.	영산강 ·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3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3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 · 강창일 · 양형일 · 제종길 · 홍미영 · 안홍준 · 윤원호 · 이목희 · 우원식 · 장향숙 · 배일도 의원 발의) .....	17
4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9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9
4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9
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9
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9
4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9
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1
49.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노웅래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	21
50.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	21
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52.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5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3
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3
55.	군인복지기본법안(김명자 의원 대표발의)(김명자 · 강길부 · 강봉균 · 강성종 · 강혜숙 · 고조홍 · 고흥길 · 공성진 · 권철현 · 김교홍 · 김덕규 · 김덕룡 · 김부겸 · 김성곤 · 김성조 · 김송자 · 김애실 · 김영선 · 김영주 · 김용갑 · 김원기 · 김재윤 · 김진표 · 김춘진 · 김충환 · 김태년 · 김학송 · 김혁규 · 김현미 · 김형주 · 김희정 · 나경원 · 노영민 · 맹형규 · 문병호 · 문석호 · 문희상 ·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순자 · 박영선 · 박재완 · 박진 · 박찬석 · 박찬숙 · 배기선 · 배일도 · 백원우 · 서갑원 · 서병수 · 서상기 · 서재관 · 서혜석 · 송영길 · 송영선 · 신명 · 신상진 · 신중식 · 신학용 · 심대평 · 심재덕 · 안명옥 · 안민석 · 안상수 · 안영근 · 안택수 · 양승조 · 엄호성 · 엄동연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윤근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선호 · 유승희 · 유시민 · 유인태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경숙 · 이경재 · 이계진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 이기우 · 이상경 · 이상배 · 이상열 · 이시중 · 이원복 · 이원영 · 이인기 · 이인제 · 이재오 · 이종걸 · 이화영 · 임종석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전재희 · 정동채 · 정문헌 · 정봉주 · 정성호 · 정세균 · 정의용 · 정의화 · 정장선 · 정진석 · 정청래 · 정형근 · 제종길 · 조성태 · 조일현 · 주승용 · 주호영 · 진영 · 채수찬 · 최경환 · 최연희 · 최용규 · 최재천 · 최철국 · 한병도 · 허천 · 홍문표 ·	

홍미영 · 홍창선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	23
56. 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o 의원신상발언 .....	25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26
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26
60.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 · 이미경 · 윤원호 · 송영길 · 이광철 · 이인영 · 김영주 · 정청래 · 강혜숙 · 김희선 · 전병헌 · 박찬석 · 윤호중 · 김재윤 · 최재성 · 백원우 · 임종석 의원 발의) .....	27
6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27
6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6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8
64.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각 소관 상임위원장(정보위원회 제외) 제출] .....	29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29
65.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29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30
66.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30
5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35
o 5분자유발언 .....	36

(14시30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1항~제52항, 제54항~제56항, 제60항~제63항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2.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 · 문석호 · 안영근 · 염동연 · 유인태 · 강혜숙 · 김현미 · 정청래 · 서재

관 · 신학용 · 양승조 · 전병헌 · 최철국 · 김교홍 · 박기춘 · 장경수 · 노웅래 · 이경숙 · 이은영 · 이근식 · 민병두 · 이상민 · 임종인 · 노회찬 · 박세환 · 나경원 · 유재건 · 장복심 · 송영길 · 우제창 · 이미경 의원 발의)

#### 3.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시32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노회찬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2년 11월 13일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 조약을 위한 이행 입법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출국 금지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현행 검사 정원 증원 규모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5명씩을 더 증원하여 총 정원을 1807명에서 1942명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검찰 담당 검사를 공개 모집하고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빈발로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출)

**8.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출)

**9.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출)

**11.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출)

**12. 인신보호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고경화 · 고진화 · 광성문 · 김영춘 · 김원웅 · 김정훈 · 김태년 · 김태환 · 김희정 · 박세환 · 박순자 · 박재완 · 박진 · 박창달 · 서재관 · 손봉숙 · 신학용 · 안상수 · 안택수 · 양형일 · 엄호성 · 오제세 · 우제창 · 유기준 · 유정복 · 윤건영 · 이계경 · 이계진 · 이규택 · 이근식 · 이상경 · 이상득 · 이상열 · 이윤성 · 이해봉 · 이해훈 · 임태희 · 장윤석 · 전여옥 · 정두언 · 정병국 · 정종복 · 정화원 · 진영 · 최경환 · 최구식 · 홍준표 · 황우여 의원 발의)

(14시42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7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신보호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나경원 의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문병호 의원, 노회찬 의원, 이상민 의원, 정화원 의원, 최구식 의원, 이종걸 의원, 맹형규 의원, 신명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형사소송법상 기간의 산입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소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과학수사의 발전과 시효 연장으로 인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금고 해당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해당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해당 범죄는 7년 등으로 각각 비례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재판 절차에 참여시켜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운영은 재판 전 단계인 검

사의 수사와 공소제기 단계의 적정성도 필요하므로 검사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소자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소송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근식 의원, 이종걸 의원, 이계경 의원, 김영주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연령을 각각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둘째, 소년 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넷째,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검사의 처분결정 전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법무부장관이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비행예방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소년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

적으로 원안을 유지하되 소년법 개정안에 맞추어 인용규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성권 의원, 손봉숙 의원, 문병호 의원 및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신 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며, 교정 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미결수용자는 징벌집행 중이라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 수수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살·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정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정시설별로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한편, 주류·담배 등을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하고 여성·노인 수용자 등의 처우를 적정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성권 의원, 노회찬 의원, 심재철 의원, 이낙연 의원, 이해봉 의원, 안상수 의원, 염동연 의원 및 전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 때에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4인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보호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하면서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형사 절차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와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둘째,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구제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제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형식을 결정으로 하는 등 구제청구제도를 보완하고 불명확한 법문표현을 명확하게 하며 법안의 체계와 자구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2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으로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신보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3인, 기권 1인  
으로서 인신보호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김현미·노웅래·박찬석·이상경·이상민·이인영·강창일·정청래·제종길·조정식 의원 발의)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5.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엄호성·박세환·박재완·주호영·임태희·이명규·배일도·김정훈·정두언·김명주·장윤석·강길부·김재경·황우여·이계경·유승민 의원 발의)

**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배기선·이화영·이인영·박영선·김우남·한광원·노영민·홍미영·김춘진·이영호·이상경·조성래·박찬석·장향숙·우원식·정봉주·조경태·최규성 의원 발의)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시5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문병호**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

다.

먼저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 정무직으로 하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서 하도록 하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문병호 의원, 이성구 의원, 안홍준 의원, 이계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의 편의를 증진하였고, 둘째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하여 양성평등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였고, 넷째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등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현재 부모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하여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였고, 마지막으로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청구취소권을 인정하여 재산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 제7427호 개정 민법이 2005년 3월 31일자로 공포되어 그중 일부 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일부 신설하였는 바 자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추가하고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맞추어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의 입양 허가 등의 사건 관장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재판소 업무 중 심판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 효율적인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헌법연구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건의 심판이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도록 헌직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3년의 범위 내에서 헌법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헌법재판소의 조직개편 등을 감안하여 2008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규정이 통일하지 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게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

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하여 주고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요건하에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4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다 끝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2.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5. 資産流動化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유기준·유승민·고진화·배일도·이계경·엄호성·정문헌·김정훈·최경환 의원 발의)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종걸·이광철·송영길·김태년·변재일·이미경·박상돈·고희선·강길부 의원 발의)

**27.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 관한法律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주호·진수희·한선교 의원 발의)

**28.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 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근현·한선교 의원 발의)

**29.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권철현·김석준·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인기·이주호·진수희 의원 발의)

**30.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清算財産處理에 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이성권·곽성문·차명진·이주호·한선교·최구식·엄호성·이재오·박형준 의원 발의)

(15시08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8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한국투자공사의 해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 관한 특별

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오제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청주 흥덕 갑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최경환 의원, 선병렬 의원, 그리고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수정·통합한 것으로서 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금보험기금의 附保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추가하고 동 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부보대상에 포함하였고,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 규모를 설정하는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학용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수정·통합한 것으로서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계산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운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혜훈 의원, 정성호 의원, 심상정 의원, 엄호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부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연 100분의 70에서 연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둘째, 불법적 채권추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

무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한구 의원, 이경재 의원, 유필우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한 다섯 건의 법률안을 수정·통합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시계획의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제외하여 내륙 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력을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테러자금”이라는 용어를 “공중협박자금”으로 수정하고 자금동결명령과 포괄적인 권한 위임 조항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대폭 삭제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카지노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금융거래의 유형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중계기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시책

과 동향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 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를 말씀드리면,

법률을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하여 등 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 취소 시 청문 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 식 등을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방법으로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 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침범지역내금 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장기신 용은행법 폐지법률안, 김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 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각 법률에 따른 관 련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고 현재 적용대상이 없 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열세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 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 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통로에서 — 잠깐만요. 잠깐 만요.)

나중에, 투표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해 주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5인 중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1인 으로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2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인, 기권 2인 으로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0인, 반대 7인, 기권 1인 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8인, 기권 4인으로서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0인, 반대 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1인, 기권 3인으로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91인, 기권 6인으로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1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

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희 의원 대표발의)(이용희·강창일·박기춘·조성래·정진석·김춘진·이시중·김동철·윤원호·김선미·홍재형·선병렬·양승조·최규식·양형일 의원 발의)

**32. 屋外廣告物等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3.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5시28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31항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인영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구로갑 출신 이인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건의 실제 종료일인 1950년 7월 29일을 법안 내용에 포함하였고, 유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까지, 사실상의 유족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일부 피해신고 누락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 심사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재심의 신청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 관련 주요정책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학계·시민단체·공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진흥센터를 두도록 하여서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 정비 및 주요 국제대회 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옥외광고업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 이사장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였고,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 및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경찰공제회의 사업내용에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학원 이외의 시설에서도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하였으며, 제2종 보통면허 소지업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물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제1종 및 대형 그리고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



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3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2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 발의)(조성래·강창일·양형일·제종길·홍미영·안홍준·윤원호·이목희·우원식·장향숙·배일도 의원 발의)

4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4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35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성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조성래 환경노동위원회 조성래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자 표기를 한글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한글화 법안으로서 약간의 자구 수정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3대강 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들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용상수도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시험업무를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확인제도를 삭제하고, 시험기관 인정범위를 외국 시험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의 정의규정에서 두 물질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취급금지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유해성심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시험기관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된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의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험항목도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44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배일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 있는 택시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의한 임금지급제 등의 변경 내용으로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택시근로자 또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최저임금법 내용을 수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변경에 따라서 택시근로자들의 임금 설정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률안과 관계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배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50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조금 계세요. 표결해 놓고……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좀 해주세요. 이게 끝나면 안 되니까요.)

환경노동위원회의 신명 의원 나오셔서 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신명**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신명 의원입니다.

노동부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이외에도 취업에 있어서 사실상 차별요소로 작용하여 문제가 되어 오던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률안 조문 중 가지번호로 되어 있거나 그동안 삭제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조문을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생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인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정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50.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2.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9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권 주십시오.)

가만있어……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제안설명을 듣고……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제안설명 듣고……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의사진행 중에는……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만있어, 그런 게 아니지.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경우대로 해야지 그러면 되는가……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가만있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회선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가만있으라니까 그러네, 자꾸.

다 알면서 왜……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環境勞動委員長代理 高義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화성 출신 한나라당 고회선 의원입니다.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요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행하는 사업에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개업 노무사 직무보조원의 자격 제한 사유였던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이들도 직무보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으며 법률안 조문 중 가지번호로 돼 있거나 그동안 삭제되었으나 정리하지 않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8명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다 설명했는데도 왜 그래……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종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신청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제에 상정되려면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동안에 교섭단체대표들하고 합의를 해 보시고, 신상발언은 드리는데……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교섭단체 대표들이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결 중에 있으니까 이것 끝나고 5분발언 직전에……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불법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안건을 교섭단체대표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

려고 하는데 끝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5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시08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정무위원회의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불법적인 교섭단체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섭단체대표한테 상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섭단체대표들이 불법적으로……)

○정무위원장대리 박상돈 정무위원회의 박상돈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 제출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에의 노출과 상관성이 인정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고 올해 말로 실효될 예정이었던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또 법 이외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공법단체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신상 변동 신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수당의 지급 정지 및 법 적용 배제 조항을 정비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하

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55. 군인복지기본법안(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김명자·강길부·강봉균·강성종·강혜숙·고조흥·고흥길·공성진·권철현·김교홍·김덕규·김덕룡·김부겸·김성곤·김성조·김송자·김애실·김영선·김영주·김용갑·김원기·김재운·김진표·김춘진·김충환·김태년·김학송·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희정·나경원·노영민·맹형규·문병호·문석호·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순자·박영선·박재완·박진·박찬석·박찬숙·배기선·배일도·백원우·서갑원·서병수·서상기·서재관·서혜석·송영길·송영선·신명·신상진·신중식·신학용·심대평·심재덕·안명옥·안민석·안상수·안영근·안택수·양승조·엄호성·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인태·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경숙·이경재·이계진·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상경·이상배·이상열·이시종·이원복·이원영·이인기·이인제·이재오·이종걸·이화영·임종석·장경수·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재희·정동채·정문현·정봉주·정성호·정세균·정의용·정의화·정장선·정진석·정청

래·정형근·제종길·조성태·조일현·주승용·주호영·진영·채수찬·최경환·최연희·최용규·최재천·최철국·한병도·허천·홍문표·홍미영·홍창선·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56. 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2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군인복지기본법안, 의사일정 제56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김명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이성구 의원, 맹형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수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병역법 개정으로 유급지원병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연장 복무하는 사람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서 하사 계급을 부여하고,

둘째,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단기복무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병역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연장복무기간으로 해서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군인의 육아휴직 요건을 다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고,

넷째, 자녀의 양육이나 여자 군인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자녀의 양육,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현행 1년의 휴직기간을 여자 군인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확대하되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의 산입은 기존과 같이 자녀 1인에 대해 1년으로 제한해서 군 인력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군인복지기본법안과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군인의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주거, 교육, 의료 등에 관한 복지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부처 간 협의와 다른 법률과의 체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군인 밀집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군 소유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국가는 군인의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정기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 지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군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섯째,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되 현재 각 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고 회계 처리는 군인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이 된 현행 제8조를 개정해서 공직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본인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 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김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동안건의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원신상발언

(16시22분)

○**부의장 이용희** 그러면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지요.

○**임종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신상발언 주제로, 의사진행발언 주제로 약간 소란을 피우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의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로 200조 원 이상이 외국으로 외국 투기자본한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3년에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동료·선후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특히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나라당에서 검찰에 147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그 당시의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또 고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불법 매수 사건은 불법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겨우 1조 3000억 원으로 6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매수한 사건입니다.

자격도 없는 론스타가 매수하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재경부 관료들, 금감원 관료들의 결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승인은 취소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했던 공무원들은 인사 조치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회에 합의가 됐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법사위원회에서 올 3월 30일날 이러한 동일한 안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 승인을 취소하고 지금 현재 재경부차관으로 있는 김석동, 수출입은행장으로 있는 양천식 등 11명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공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일 이 안건이 44번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번호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안건이 오후 4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사위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임시국회 4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장께서는 의사를 다 처리한 다음에 발언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를 넣어달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건을 넣어달라고 제가 10월 29일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부당한 거다,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장께서는 ‘오늘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라’, 오늘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도 잘못이지만 절차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서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4월 임시회 때 환노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이 있습니다. 6월 임시회 때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6월 본회의에 상정됐었습니다. 안건 목록에도 올라 있었는데 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환노위 위원들과 법사위 위원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양대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하는 것은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지 모든 법안을 좌지우지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외국 투기자본이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파이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외환위기의 본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검찰도, 금감원도, 감사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승승장구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 국회가 오늘 해야 됩니다. 이 처리안을 반드시 오늘 올려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러 제가 나온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용희 임종인 의원 수고 많으셨어요.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6시27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이주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주호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이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주호 의원, 이경숙 의원, 김영숙 의원과 김교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이계경 의원, 정봉주 의원, 최순영 의원, 이주호 의원 그리고 고 구논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중·고 전 학년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항목에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법정전염병인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만 12세까지 한 차례 더 추가 접종하게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유예 사유에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추가하였고, 학교의 퇴학처분에 대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교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인권 증진과 학교운영 내실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이미경·윤원호·송영길·이광철·이인영·김영주·정청래·강혜숙·김희선·전병헌·박찬석·윤호중·김재윤·최재성·백원우·임종석 의원 발의)

(16시32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정청래**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현실을 입법에 반영하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이 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뉴스 송수신은 인터넷망 또는 위성통신망 등을 이용하고 무선국 시설은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터넷망 등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경우도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뉴스통신사업자의 필요적 게재사항, 등록 취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지사 설치 및 벌칙 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정청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6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5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박순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가맹사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서 영세한 산업구조하에 있는 가맹사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9조에서 자금의 지원대상을 이미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안 제3조를 삭제하는 대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취소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 시행 이전에 선적되어 법 시행 이후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 서류와 위해성 평가 서류 등에 대한 구비 요청이 곤란함에 따라 부칙에 수입승인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운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6시39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최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최순영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최순영 의원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기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최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각 소관 상임위원장(정보위원회 제외) 제출]

(16시42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써 그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1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1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6시43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65항으로 추가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6시44분)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65항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동철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대상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 사건입니다.

둘째,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3인을 추천받아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셋째, 특별검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3인, 그 외의 공무원 40인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통령이 3인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중 최소 1인은 판사 또는 검사경력 없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검사는 3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수사내용은 공표·누설할 수 없도록 하되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20일간의 준비기간 외에 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차 30일, 2차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3개월,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김동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으로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6시52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66항으로 추가 상정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66.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부의장 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8월 2일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여 음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가부를 다시 한번 표결하여 법률로서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3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으나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위해 재의 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회로부터 이송된 이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일부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당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위원회(대안)을 수정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무사귀환하여 생존해 있는 생환자 중 생존자를 위로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여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그간 정부 입법 과정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피해 없이 무사귀환하여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의료지원금을 지급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하여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이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니라 위로금 지급 신청 당시 생존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강제동원되었다가 무사귀환하였으나 사망한, 즉 생환자 중 사망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월남전, 6·25 등 유사 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 재정에도 많은 부담으로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정부의 재의요구 취지를 감안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법률안에 이견이 없으며 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성실히 이행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헤량하셔서 정부의 재의 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박명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1인당 7분씩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장복심 의원

께서 꼭 10분을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장복심 의원에 한해서 10분간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의원** 장복심 의원입니다.

우선 제 부덕의 소치로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제가 조선의원입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법률안이, 더군다나 너무나 안타까운 민생법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를 요청한 법안은 아마 17대 국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다 알고 계시지만 간곡히 간략하게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일체에 강제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며, 또 우리 대한민국의 60년이 넘는 고통의 큰 숙원을 해결한 17대 국회 입법활동의 훌륭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늘 다시 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불초 본 의원이 이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으면, 좀 더 훌륭한 의원이 이 법안을 맡아서 했으면 벌써 잘 처리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굉장히 무거운 죄송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이 법률을 우리 17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일체에 강제동원되어 생사를 다투는 전쟁터와 혹독한 노역으로 사지에 내몰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피해를 정부와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자로 이번에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숙원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일본 정부로부터 수령한 무상 3억 불의 절반

은 생존자의 몫입니다.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징용 및 징병 피해자 103만 명에 대해서 3억 6400만 불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에 생존자는 93만 명으로 생존자 보상금은 전체 보상 청구액의 51%에 해당하는 1억 8600만 불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3억 불을 받아왔지만 대부분을 보상이 아닌 경제개발에 사용했으며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만큼 청구권 자금을 희생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이며 명백한 도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금 마련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의장님!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해인 1965년 당시 한국 정부의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1965년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의 예산은 3억 5000만 불 규모였습니다. 무상 3억 불을 받아 온 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보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202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몇억 원의 예산이, 몇백억 원의 예산이 부담스러워 생존자를 배제한다, 너무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생존자 지원 대상을 4만 90명으로 추정했지만 11월 16일 현재 피해신고 처리 결과를 보면 생존자는 2만 4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부가 추정한 인원의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넷째, 1971년 당시 김학렬 부총리는 국민소득 2000불이 되면 생존자들도 틀림없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고 각서도 써 줬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이 불쌍한 우리 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생존자 어르신들의 통한의 눈물을 우리 국회가 닦아 드려야 된다고 저는 감히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제동원희생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신 민·관위원회의 민간위원 열 분 중 6명이 희생자 단체에 동의 서명을 하셨는데 민간위원들께서도 연로한 생존자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가 회복하도록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 하원에서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인정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우리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이자 희생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오늘 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7대 국회가 어렵고 소외된 민생을 챙기는 정의로운 민의의 전당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떳떳이 다 하려면 이 법률안만큼은 지난 7월 3일의 의지대로 다시 한번 절대적 동의로 통과시켜야 마땅한 도리라고 감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권위와 자존을 되찾고 희생자들의 오랜 한과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 드려야 마땅하다고 간청을 드립니다. 정의롭고 소중한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무기명투표의 찬성을 절대적으로, 3분의 2 이상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무산됩니다.

정부에서 낸 이 법안은 생존자들에게 하나의, 한 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습니다. 의료지원금으로 1년에 50만 원인가 얼마를 주겠다는데 의료지원금은 이게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원이기 때문에 당장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얼마간의 지원금으로 떳떳이 남은 여생이나마 행복하게 살다 가시라는 우리 모두의, 우리 국민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5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평생을 이 몇 푼의 지원금에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냥 동정으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몫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만큼이라도 돌려 달라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천 만년 하시겠습니까? 이런 귀중한 자리에, 이런 귀중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좋은 일에 한 번쯤은 크게 마음을 열고 써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감히 요청드립니다.

정부 물론 어렵지요. 예산 힘듭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돈을 정부에서 갖다가 경부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만들고, 전부 오늘날 육성한 경제 발전



에 썼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거부를 해야 될 이유가 됩니까?

제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 이 법률안을 맡아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큰, 천사의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부탁드려서 많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경청해 주셔서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은혜를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용희** 장복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님, 죄송하지만 7분 이내에 좀 해 주시지요. 부탁드립니다.

○**이계진 의원** 이계진입니다.

발의하신 장복심 의원보다 짧게, 한 7분 정도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중대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57번 의제를 심의해야 될 순간에 대단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정부에 보냈다가 대통령이 재심의 요구를 해서 온 안을 그대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헌법 53조 특히 3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어찌 헌법을 만든 우리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뻔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나마도 고쳐서 다시 이렇게 재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행자부장관님의 그 말씀, 정부의 어려움, 예산상의 어려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지난번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던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 재심의를 요청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시 찬성해서 정부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말기에 없으니까 제 발언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광복 후 62년 동안 겪어 온 고통과 한을 이제는 해결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동 법률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재의결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동 법률은 태평양전쟁 당시 현지에서 사망한 분들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시는 연로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겨우 500만 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법률이 아니고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통한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풀어 드리기 위한 민생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불쌍한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노무현 정권이 매정하고 인색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이낙연 의원께서 찬성발언에 나서서 “살아 돌아오신 것이 잘못입니까? 손해 봐야 할 이유입니까?”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제 가슴을 칩니다.

일제시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신 것이 정말 손해 봐야 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께 편협한 역사인식과 희생자에 대한 몰이해를 조장한 몇몇 관계 공무원들의 죄가 크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하며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내세운 주요 이유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 일본으로부터 받아 온 보상 재원의 대상에 생존자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박약하며 오히려 한일협정의 체결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보면 생존자를 포함해서 보상금을 받아 왔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즉 한일협정 회의록과 정부의 외교문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생존자 93만 명을 포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103만 명에 대한 보상을 한국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적 청구권과 한국 민간인 피해자 개인적 청구권에 대한 부분에는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명시하고 청구권을 소멸시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과 징병에 동원돼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거나 구사일생으로 귀환하였다면 그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이제는 돌려줘야 할 겁니다.

당시의 한국 경제기획부가 외무부에 보고한 서류에는 한일 정부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 처리에 대한 방침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일본 측의 한국정부에 대한 ‘민간인이 보유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해 버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외무부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청구권에는 한국 정부의 청구권과 한국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소유자에게 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당시 외무부는 태평양 전쟁의 개별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었고 이제는 4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 강제동원된 한국인 징용·징병 피해자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받아 온 돈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 발전을 시켜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유족이거나 생존자의 경우에도 85세 이상 고령이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기억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1월 16일 현재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위원회에서 피해신고 처리한 결과를 보면 현재 사망자와 후유장애자, 행불자가 1만 2336명,

생존자가 2만 4263명, 귀환 후 사망자가 2만 543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지원 대상으로 추정된 숫자, 현재 사망자 1만 8000, 생존자 4만 명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이름도 알 수 없고 연령도 알 수 없는 선친들의 유해가 일본 곳곳에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는 조사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이 오늘까지 고통으로 울부짖는 피해 당사자들의 책임은 아니지 않을까?

일제 식민지하에서 광복이 된 지 62년이 흘렀지만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특히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3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흔두 차례나 일본 정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결과 생존자 개인도 일본의 안전의무 위반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보상금은 한국 정부에 일괄 주었다는 판결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도 이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본에서도 동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육성이라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민생법안을 재의결하도록 요구한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지 말고 의회의 권능을 다시 찾아서, 의결했던 정신을 다시 살려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용희** 이계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병문 의원, 선병렬 의원, 정성호 의원, 채일병 의원, 김기현 의원, 이성권 의원, 정문헌 의원, 이주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회에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 이후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57항을 의결하여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7시18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7시2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6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서혜석 의원님 가지지 마세요. 조금 더 보고 가지라고. 가지면 안 돼요.

투표수도 16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의원들이 떠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0표 중 가 52표, 부 10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107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제5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시37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57항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노현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 26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적용 대상자 중 생존자의 대부분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과 이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지원의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간사회의와 피해자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 교섭단체 간 합의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제명은 당초 본회의를 통과했던 태평

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가장 문제가 된 생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문제는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대신 의료지원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희생자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족의 범위와 그 순서는 강제동원희생자나 미수금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노현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37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 5분자유발언

(17시42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출신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업소 임대업자 대통령 후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온 국민들이 겨울을 실감하며 월동 준비에 바쁘지만 한편 대선이란 달도 안 남은 이 시기에 유력 대통령 후보의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비리 의혹에 몸의 추위보다도 마음의 추위가 훨씬 크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많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이명박 후보의 불법 성매매 업소 건물 임대 문제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장내 소란)

이분들은 교회 장로인 이 후보가 성매매 업소에 건물 임대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 본회의 시간에 이 후보의 “마사지 걸” 발언 문제로 이 자리에 서서 이 후보의 반인권적·반여성적 의식과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하는 의원 있음)

또 이때 저는 이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과 함께 이 후보 소유의 강남 건물 지하의 유흥업소 ‘섹시 클럽’이 “미인 100명 항상 대기” “팁 4만원”의 간판을 내 걸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 임대업자 알선 행위로서의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국회의 정식 발언 시간에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또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더구나 대선 후보라면 당장 그 업소를 폐쇄했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팁 4만원” 홍보 문구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쿨쿨 클럽’으로 바꾼 채 그 종업원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월세를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11월 19일 밤 8시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강기정 의원과 유승희 의원—과 그리고 우리당의 양성 평등 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여성단체, 각 언론사들과 함께 이 후보의 강남 영일 건물로 급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에는 우리 팀 선발대가 가 보았을 때 그 업소는 앞문은 닫고 뒷문 영업만 하더니 정작 우리가 도착했던 시간에는 뒷문마저 닫고 갑자기 “11월에서부터 2월까지 내부 수리 중”이라는 종이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2시간 뒤인 밤 10시경에는 마지막 팀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건물로 갔을 때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딱지를 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문제 업소가 갑자기 “내부 수리 중”이라며 문을 닫은 척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행위,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매매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그 법에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이 알선 행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에 의하면 불법 성매매를 조장·알선하는 행위나 그리고 건물·토지·자금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246명이 처벌되었고, 올해만 해도 성매매 업소 건물주가 처벌된 사람이 8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253명은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는 성매매 업소의 장소를 임대해 준 건물주이고, 불법 성매매로서 영업 이익을 취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물 관리 업체의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미 이런 사실은 지난 수개월간 언론과 여성단체 그리고 저도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불법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당연히 이 후보도 경찰·검찰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되고 신성한 법률에 의거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분노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되기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소리치는 이 후보가 우리 자식들 앞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성매매 업소도 서민 임대업이니까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그런 변명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화대를 월세로 거두는 건물 임대업자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후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대책위에 양성평등본부를 만들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매매퇴출본부를 만들어 이명박 후보를 퇴출시키고 인권과 여성교육, 사회 정화운동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부의장 이용희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는 것은 잘 들어 보시고. 시간……

(「5분발언을 국정에 관한 것을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피차 마찬가지로 서로 들어봐.

들어 보라고, 들어 보라고.

(「부의장이 제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문서 위조 전문가이며 국제 사기꾼인 김경준과 그의 부인, 누나, 어머니 등이 총동원된 일가족 국제 사기단의 거짓말 잔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김경준 일가족의 파렴치한 범행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은 김경준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횡령과 주가 조작 사기 범죄의 공범이자 최근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범죄인입니다.

에리카 김은 미국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불법대출을 받고 탈세를 위해서 회계사를 시켜서 허위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죄로 지금 미국 법원에 기소되어서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리카 김은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횡령사건의 공범이기도 합니다. 에리카 김은 동생 김경준이 2001년 모두 19개의 유명회사를 만들 당시에 미국 회사의 정관을 구해서 국내에 있는 동생 김경준에게 제공한 공범인 것입니다.

이들 남매는 이렇게 빼돌린 돈 384억 원으로 미국 LA 비버리힐즈에 한 채에 수백만 달러나 하는 초호화판 저택 2채를 구입하고 남은 돈을 자신들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해 두었음이 미연방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김경준의 부인 이보라는 어쨌습니까? BBK 이사였던 이보라는 남편 김경준과 함께 유명회사를 만들어서 무려 219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돌린 횡령범죄의 공범입니다.

오늘 김경준의 어머니 김영애 씨가 이른바 결정적 증거서류라는 것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영애 씨는 아들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350만 달러나 되는 비버리힐즈의 호화저택을 증여받았다가 다스 측에서 횡령자금을 빼돌린다고 소송을 걸자 황급하게 아들 명의로 되돌려 놓은 사람입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되돌려 준 것입니다. 결국 아들, 딸, 며느리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영애 씨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갖고 들어온 이른바 BBK 주식매매 계약서라는 것도 이명박 후보의 인감을 위조해서 만든 허위서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김경준이 기획, 연출, 감독, 주연까지 도맡아 하고 누나 에리카 김과 부인 이보라가 적극 도우고 그의 부모가 묵인 또는 방조한 국제적인 가족 사기극인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이들 범죄자들의 말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듯 틀어대는 일부 방송과 언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의혹을 만들고 부풀려서 남의 당 후보에 흠집 내려고 하는 여론의 파렴치한 작태들입니다.

5년 전에 김대업이라는 회대의 사기꾼과 일부 언론, 여당의 공작에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 다시 속지

는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정종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김종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부당한 압박, 협박에 검찰이 굴복하지 않는다면 대선후보 등록 전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횡령범죄 혐의는 움직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사이에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덮을 것인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사이에 덮이 있었고 덮을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소위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이것을 100%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일곱 가지 근거만 드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식이라면 70가지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가지를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고 거기서 진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면계약서는 100% 진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고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명박 후보의 이제껏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정권에서 일했던 전 대사까지도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명박 후보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3자입니다. 이제는 제3자의 백 마디 해명보다 이 후보가 직접 나설 때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본인 자필 서명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하고 그러나 한나라당은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 후보는 이미 지난 한나라

당 경선에서 한나라당 당원과 국민을 속이고 한나라당 후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도곡동 땅은 내 것이다. BBK와 관련해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내미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쳤던 이명박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지금도 그런 말을 할 자신 있습니까?

이 후보는 오늘도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BBK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이 후보는 오늘은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런 대선후보는 역대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이명박 후보는 대선후보 등록 전에 후보를 자진사퇴할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오죽하면 비비 꼬이는 BBK 주가조작 사건 해명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조차 이명박 후보에게 고해성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후보 자리는 비리 범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범죄 비리 후보를 언제까지 감쌀 것입니까? 이제는 후보를 교체할 때 아닙니까? 그것을 논의할 때 아닙니까?

이 후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대선후보를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강동갑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입니다.

어제 신당 동료 의원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아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 시절 탁월한 학생운동 지도자였고 사회에서는 산업화의 선봉이 되어 가난과 도탄에 빠진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든 신화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서울 시장으로서 폴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청계천 복원 등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김정준 어머니께서 가지고 온 한글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BBK 문제는 완전히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이 한글 계약서는 2000년 2월 21일자로 작성돼 있는데 당사자의 육필 서명이 없고 인감도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서가 명백히 위조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김정준에게 매각했다고 하는 BBK 주식은 2000년 2월 21일 당시 김정준의 친지 홍종욱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BK 논란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에게 한 방을 기대하며 동분서주해 오셨던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머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장관 시절 자신의 아들 친구에게 대학 수시전형원서의 추천서를 써 줘서 학부모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개인 집무실에 국민의 세금으로 72만 원짜리 고급 비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장관이 내야 할 적십자회비는 내지 않고 장관 업무추진비로 부인의 적십자회비 190만 원을 대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선사후가 아니라 선사후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직자는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 즉 먼저 자신의 주변관리를 잘한 후에 공무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초·중·고교 시절 자기를 먹고 고 학업을 시켜 준 삼촌을 찾아보지 않아서 소송이 걸려서 1000만 원을 물어주었습니다.

삼촌들과의 불화로 어머님 장례식도 낮에 치르지 못하고 밤에 치를 정도로 친척들과 고향 주민들 사이의 평판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신제가도 하지 못하면서 가족 행복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 인권을 크게 침해했습니다.

2004년 5월 2일 30대 성인 장애인을 목욕시킨

다면서 남녀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보는 가운데 신체 주요 부분이 노출되도록 해서 장애인 인권을 크게 침해했습니다.

헌법 9조에는 경로효친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26일 노인 폄하발언으로 노인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자랑스런 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용병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여당 경선 과정에서는 차떼기, 박스떼기, 콜떼기, 명부떼기 등 불법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동원하여 '악법은 법이 아니다. 통일의 길 막아서는 국가보안법 물리치자.'라는 이념성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정 후보는 2001년 1월 '친일 문제는 여자·금전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국가 지도자에게는 도덕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역사적 관점이다.'라고 말해 놓고 자신의 부모는 숨겼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부친은 무엇을 했습니까?

일제시대에는 금융조합 직원을 했고 자유당 때는 대한청년단 간부를 했습니다.

이 금융조합이 무엇입니까? 농민의 피를 빨고 고리대금을 한 총독부의 하수 기관 아닙니까?

또 이 청년단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독재정권을 뒷받침하고 결국은 국민방위군사건을 일으킨 불명예스러운 집단 아닙니까?

이러한 집단의 자손이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남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과거사 청산을 부르짖던 열린우리당, 신당 여러분들은 정동영 후보가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정치인이 과연 가족행복을 나눠주는 지도자, 국민통합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동영 후보의 감춰진 부정한 모습과 민주화 학생운동 지도자, 한국산업화의 상징적인 지도자, 지방자치행정가, 나라의 경제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진면목이 국민 앞에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김충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경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를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생 문제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을 광역철도로 추진해서 방이동에서 강동을 거쳐 하남 구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08년 완공 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에 이어 논현동에서 방이동까지의 2단계 사업을 추가하는 9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10월 9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울지하철 9호선 종착점을 송파구 방이동으로 할 경우 정부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강동구에서 인접한 강남구로 이동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반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무려 40~50분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동구 강동역에서 강남구 대치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5호선-8호선-2호선-3호선으로 순차적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 승차시간보다 오히려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없고 교통체증 또한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강남구로 출퇴근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강남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매번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강동구 주민이 극장과 쇼핑센터 등 강남구에 집중돼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이는 결국 불편과 시간낭비라는 사회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남시와 비교할 경우 강동구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양호한 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남시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만약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강남구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통체증 등으로 평균 1시간여를 소비해야 합니다. 만약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스를 타고 천호역까지 간



뒤 또다시 5호선-8호선-2호선-3호선 등으로 순차적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특히 하남의 중·고생들이 강남구 대치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승용차로 3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동구를 비롯해 하남시 등 강남 지역에 대한 동북부 지역의 교통수요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을 강남구 논현동에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9일 논현동에서 송파구 방이동까지의 2단계 사업을 추가하는 9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9호선 2단계 사업을 송파구 방이동까지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강남구로 출퇴근하거나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는 강동 및 하남 지역 주민과 학생의 교통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강동구 및 하남시 등 동부 지역의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9호선을 강동을 거쳐 하남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은 2006년 1월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서면질문서를 통해 방이동에서 둔촌주공아파트-길동생태공원-하남까지 9호선 건설계획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잠실운동장에서 방이동 구간이 도시철도로 추진될 경우 방이동에서 하남구간까지의 연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4일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기획관 또한 잠실운동장에서 방이동까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선행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된 이후 하남구간까지의 연장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9일 건설교통부는 논현동에서 방이동까지의 9호선 2단계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잠실운동장에서 방이동까지의 사업추진이 확정된 만큼 이제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증대하는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방이동에서 하남시까지로의 9호선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이동과 인접한 강동구와 하남시의 교통수요, 다시 말해서 강동에서 세 차례 지하철을 갈아타야 강남까지 이동할 수 있는 현실적 불편을

고려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하철 9호선은 어차피 강동을 거쳐 하남까지 연장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수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어렵더라도 전 구간이 한꺼번에 시행되어야 예산을 절약하는 것과 함께 그 경제적 효과 또한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건설교통부는 9호선 건설계획이 강동구를 지나 하남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이상경 의원께서 진짜 5분발언해 주셨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해 주셨고,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께서 마지막 5분발언 또 좀 잘해 보시지요, 뭐. 잘해 보시라고요.

○이인기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입니다.

오늘 6·25전쟁에 참전한 분, 월남에 참전한 유공자 그분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민족 간의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을 극복하고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 대열에서 그 오명을 벗어 버리고 당당히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참전용사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신 6·25전쟁과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아직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까? 국가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와 눈물을 흘렸던 6·25 참전용사들이 아닙니까? 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서 오늘날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등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월남 참전용사들 아십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 위에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그분들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지금 약 20만 명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3만 명, 4만 명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80이 다 되어 가는데 살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이분들이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불리는 그 명예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2005년도에 6·25 참전과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다마는 지금 2년이 지난 그리고 17대 정기국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훈체계가 흔들린다고 이 법안의 상정을 반대했습니다. 상이군경 용사들, 단순히 전쟁에 참전한 분들과 신체적인 장애를 입은 분들, 피해를 본 분들과 형평성 문제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들과 월남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께서 상이군경회 분들과 많은 대화와 타협을 해서 상이군경회에서도 양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국가유공자로서 재정적인 지원, 그 혜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칭과 호칭을 국가유공자로 해 줌으로써 명예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의 동의를 구해 오라고 해서 구해 왔습니다. 다마는 또 정부에서는 보훈체계 등등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다마는 보훈처의 국가유공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그 업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본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본인 스스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승진해서 보훈처 차장까지 진급했습

니다. 다마는 얼마 전 이 사건이 드러나서 보훈처 차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보훈체계를 흔들려 놓은 것이지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단순히 명예만 달라는 그 법률이 어떻게 해서 저는 보훈체계를 흔들리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6·25와 월남에 참전한 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재정지원이 아닌 단순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27일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국가가 결정되게 되는 투표를 프랑스 파리에서 합니다. 유치특위 위원님들 여섯 분들과 함께 내일 출국을 해서 11월 27일 새벽 3시에 '여수, 코리아'라는 메아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우리 이인기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까지 몇 가지 주요안건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각 당이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회의 의사일정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고경화	고조홍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선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명엽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이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정갑윤 정성호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최병국  
 최순영 최재성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허천허 태열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찬성 의원(17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선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봉숙  
 서재관 서혜석 신명엽 신중식  
 심재엽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백원우 변재일 원혜영 원희룡  
 서재관 서혜석 신명엽 심재엽  
 송영선 신상진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이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이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광재 이광철 이목희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성구  
 이병석 이상배 이성권 이성권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화영 이한구 이화영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재오 이재창 이진구 이진구  
 이주영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임종석 장윤석 정갑윤 정성호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진구  
 이주영 임종석 장영달 장윤석  
 장영달 장윤석 정갑윤 정성호  
 정성호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정성호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성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진영 최병국 최순영 최재성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최재성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허천선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기권 의원(2인)**

이상민 최규식

○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황우여  
기권 의원(2인)

유인태 최규식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재오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정갑윤	정성호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재성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서병수 이재창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영 이 재 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정갑윤 정성호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재성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이상배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정갑윤 정성호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재성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강재섭 이명규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성범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재완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찬석  
 박종근 박진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희    유 정 복    윤 건 영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중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순 형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고 조 홍

**기권 의원(5인)**  
 유 인 태    윤 두 환    이 명 규    이 윤 성  
 정 종 복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주    김 홍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홍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중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유 기 준    이 상 배    장 영 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희 선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춘 진    김 충 환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희 선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교홍 김덕규 김병호 김송자 김영덕 김우남 김재윤 김태환 김효석 노영민 단병희 문명광 박세환 박재완 박찬숙 서병렬 신상진 안경률 안택수 오영식 우제창 유기준 이계경 이기우 이병석 이성권 이원영 이재웅 이진구 임채정 장영달 정성호 정진섭 조배숙 주성영 진영 천정배 최병국 최재성 허준표  
 김기춘 김동철 김부겸 김애실 김영선 김원기 김춘진 김학송 김희정 노웅래 문희상 박병석 박순자 박종근 박희태 서상기 송영선 신학용 안명옥 안홍준 오제세 유기홍 윤건영 이낙연 이상민 이승희 이인기 이재창 이한구 임태희 장윤석 정의화 정청래 조성래 주송용 차명진 최경환 최순영 최태열  
 김기현 김명자 김석준 김양수 김영숙 김원웅 김충환 김형주 나경원 노현송 문병호 박계동 박상돈 박승환 박진 배기선 서재관 신국환 심재엽 안상수 양승조 우상호 원혜영 유승희 윤두환 이광철 이명규 이상배 이시종 이인영 이종구 이혜훈 장경수 정갑윤 정장선 정화원 조성태 지병문 채일병 최구식 최연희 최현우  
 김낙성 김명주 김성곤 김영대 김용갑 김재경 김태년 김홍업 남경필 노회찬 문석호 박기춘 박성범 박영선 박찬석 변재일 서혜석 신명철 심재철 엄호성 우윤근 원희룡 유인태 이경숙 이군현 이목희 이성구 이영순 이재오 이주호 임종석 장복심 정문현 정종길 조성식 진수희 천영세 최규식 최인기 홍재형  
 정진석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희 문병호 문희상 문석호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희태 배기선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송영선 신명철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택수 오영식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이계경 이기우 이병석 이승희 이인기 이재창 이한구 임채정 장영달 정성호 정진섭 조배숙 주성영 진영 천정배 최병국 최재성 허준표  
 장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희 문병호 문희상 문석호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희태 배기선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송영선 신명철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택수 오영식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이계경 이기우 이병석 이승희 이인기 이재창 이한구 임채정 장영달 정성호 정진섭 조배숙

기권 의원(1인)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이 상 배 정 진 석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희 선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종 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호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문 회 상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용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성 호  
 정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박 세 환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석 준 김 성 곤 김 병 호  
 김 송 자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원 기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종 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호 석 김 희 정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호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상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신 국 환 심 재 엽 안 상 수 양 승 조  
 우 상 호 원 혜 영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목 회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목 회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이근현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목희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변재일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성구 이성구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이병석 이상민 이시종 이영순 이영순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인영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혜훈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유승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이근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배숙 이목희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조성래 지병문 진수희 진영 주성영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주승용 지병문 천영세 천정배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국 최순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재천 최재천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허천 홍재형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허천 홍재형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조배숙 주성영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천정배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황진하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박세환 최규식

**○인신보호법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3인)**

김동철 선병렬 이상민

**기권 의원(1인)**

홍창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정동채	정문현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b>반대 의원(5인)</b>			
맹형규	박세환	이상배	진영
최경환			
<b>기권 의원(3인)</b>			
김석준	안명옥	정갑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채정	임해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철 국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인)**

노 회 찬    단 병 호    현 애 자

**기권 의원(2인)**

유 승 희    홍 미 영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정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철 국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회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회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상 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맹 형 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권오을	권철현	권기현	김기현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안경률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김학원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광철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성구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이한구	이혜훈	임채정	임태희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정문헌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윤두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이광철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배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명숙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채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반대 의원(1인)**

이상배

**기권 의원(4인)**

김태홍 안영근 이계진 정화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김태홍 안영근 이계진 정화원  
김태년 김태홍 김형주 김홍업  
김학원 김재윤 김우남 김영덕 김무성 김덕규 권철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김석준 김성곤 김원기 김춘진 김태환 김홍업 김희정 김충환 김명자 김부겸 김애실 김용갑 김재경 김재환 김희송 김학송 김희정 김현송 김병호 김계동 김상돈 김재완 김희태 김병수 김선병 김신국 김심상 김안명 김안홍 김오제 김원혜 김유승 김윤건 김이계 김이낙 김이상 김이시 김이인 김이재 김이주 김임채 김장복 김정동 김정장 김정청 김조성 김주승 김차명 김최경 김최병 김최철 김한명 김현애 김홍준 김홍재 김황진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박세환

정문현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경숙 이광재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영순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민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한 광 원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9인)**

강 기 갑 노 회 찬 단 병 호 박 계 동  
 심 상 정 이 영 순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 의원(2인)**

최 경 환 최 철 국  
 (김정권·김덕규·채일병 의원 표결기 미조  
 작. 실제 찬성 의원 178인, 강기갑 의원 표결  
 기 조작 착오. 실제 반대 의원 9인, 최철국  
 의원 표결기 미조작. 기권 의원 2인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홍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엮 심 재 철 안 경 릉 안 명 옥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릉  
 유기 준 유기 흥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군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8인)**

강 기 갑 김 종 릉 노 회 찬 심 상 정  
 임 종 인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 의원(2인)**

이 영 순 최 경 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희 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7인)**

강기갑	심상정	이영순	임종인
-----	-----	-----	-----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1인)**  
 최철국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8인)**

강기갑 노회찬 심상정 이영순  
 임종인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4인)**

안홍준 윤두환 이목희 최규식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종석 임채정 임혜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8인)**

강기갑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임종인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2인)**

노회찬 배일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홍엽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엽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신국환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김학송	김형오	김홍업	김희정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문석호	문희상	문희광	민병두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이광재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박진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송영선	신국환	신명철	신상진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종석	안명옥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진영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황진하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주호

**반대 의원(11인)**

강기갑	김종률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임종인	차명진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3인)**

김정권	이성구	홍미영
-----	-----	-----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광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6인)**

강기갑	권철현	심상정	이종구
홍미영	황진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9인)

노회찬	단병호	박계동	심상정
이영순	임종인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안경률	안명욱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철 국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서 상 기 심 재 철 최 경 환 한 광 원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균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권 철 현 최 규 식 홍 미 영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

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흥 업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문 회 상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회 태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재희 정갑윤 정문현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임종인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清算財産處理에

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훈 김재홍  
 김정권 김중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재희 정갑윤 정문현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영숙 임채정 현애자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기춘 김용갑 이상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屋外廣告物等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군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성 래  
 조성 태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김 형 주 이 광 철

**기권 의원(1인)**

문 회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회 상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회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엮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성 래  
 조성 태 조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회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회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회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석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임중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3인)**

권철현 이병석 차명진

**기권 의원(1인)**

이윤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효석  
 노현송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희석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찬석  
 박종근 박진 백원우  
 배기선 배일도 배상기 서재관  
 서병수 서상기 서병렬 손봉숙  
 신명 신상진 신학용 안명옥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오제세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항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홍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정복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이경숙  
 윤건영 윤두환 이광철 이낙연  
 이경재 이광철 이상민 이시종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인기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재창  
 이영순 이원영 이재오 이주호  
 이인영 이재오 이주영 이진구  
 이종구 이주영 이혜훈 임종인  
 이한구 이혜훈 임채정 장영달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전병헌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정성호  
 정갑윤 정문헌 정진석 정진섭  
 정장선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정진석 정화원 주승용 지병문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차명진  
 조정식 주성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박승환

이혜훈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학송    이윤성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윤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9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용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찬    이 혜 훈    임 종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인 기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전 재 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

**정개정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희 선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업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 준    유기 흥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용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찬    이 혜 훈  
 임 종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인 기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안 택 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희 선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춘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노 회 찬	단 병 호	문 석 호	문 희 회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종 근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춘 진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회 찬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단 병 호	문 석 호	문 희 회	문 희 상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경 숙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업	심 재 철
이 경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안 경 룰	안 명 옥	안 상 수	안 영 근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용 희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이 한 구	이 해 찬	이 해 훈	임 중 인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영 달	장 윤 석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장 향 숙	진 병 현	진 재 회	정 갑 윤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정 식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찬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이 혜 훈	임 해 규	장 경 수	장 영 달
최 성	최 순 영	최 인 기	한 광 원	장 윤 석	장 향 숙	진 병 현	진 재 회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의 화
홍 문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기권 의원(4인)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원 희 룡	이 계 진	최 규 식	홍 미 영	조 성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허 천 최 규 성 최 인 기 한 광 원 현 애 자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형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박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유희 이원영 이운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윤건영 이주영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진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유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명주 김애실 김종률 박상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진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노용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인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현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종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정문현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교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최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윤건영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임해규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교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최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인 기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웅 래	단 병 호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안 경 룰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임 해 규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성 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균 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성 권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강길부    김용갑    정갑윤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선택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희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김희정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신상진	신학용	신상정	신재엽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
심재철	안경률	안영근	안택수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혜훈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이해봉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기권 의원(2인)

송영선 이용희

○고업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해규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원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명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현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심재철 임종석

**○군인복지기본법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公職者 등의 兵役事項 申告 및 公開에 관한 法律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희 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    천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장선 의원 표결기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184인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    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안경률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세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인  
 임해규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운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    희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    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운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노응래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문병호	문석호	문희	박기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문희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안경률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이진구	이해봉	임해규	장복심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임종인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창선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황우여	황진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기권 의원(1인)**

박찬석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기권 의원(3인)**

박성범 박세환 이진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회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인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회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인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회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홍 미 영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임 해 규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회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강 봉 균    김 성 조    유 인 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회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삼성 비자금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진 화    공 성 진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룰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진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열  
 이 성 권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호    임 종 석    임 종 인  
 임 해 규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몽 준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제 중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규 식    최    성    천 영 세  
 최 연 희    최 인 기    현 애 자    최 순 영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홍 문 표

**반대 의원(17인)**

고 조 흥    고 희 선    김 무 성    김 성 조  
 김 용 갑    김 충 환    김 태 환    박 세 환  
 박 종 근    서 상 기    송 영 선    신 국 환  
 이 규 택    이 인 기    한 선 교    허 태 열

**기권 의원(17인)**

고 흥 길    권 경 석    김 기 춘    김 석 준  
 김 성 곤    박 찬 석    심 재 엽    안 영 근  
 이 경 재    이 윤 성    이 진 구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주 호 영    최 병 국  
 허    천

박 계 동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필 우    윤 건 영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광 철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해 규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여 옥    정 몽 준    정 문 헌    정 종 복  
 정 청 래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성    채 일 병  
 최 연 희    최 인 기    한 병 도    최 순 영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황 진 하    홍 재 형

**반대 의원(2인)**

이 계 진    이 윤 성

**기권 의원(13인)**

김 낙 성    김 무 성    김 영 덕    김 재 경  
 김 중 룰    박 찬 숙    송 영 선    이 미 경  
 이 상 경    장 복 심    정 성 호    제 중 길  
 허 태 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37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세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출석 의원(26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명광 박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환 박순자 박승환  
 박성범 박세환 박종근 박진  
 박영선 박재완 박형준 박희태  
 박찬석 박찬숙 박원우 변재일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해석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진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우원혜 영원희 룡유기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해훈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출장 의원(2인)

유재건 정의용

○청가 의원(13인)

장혜숙곽성문 김광원 김낙순  
 김재원 김종인 심재덕 이상득  
 이석현 이인제 임인배 채수찬  
 최용규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부장관 권오규  
 부총리겸부장관 김신일  
 부총리겸부장관 정성진  
 부총리겸부장관 박명재  
 부총리겸부장관 김종민  
 부총리겸부장관 주영주  
 부총리겸부장관 용수진  
 부총리겸부장관 이상하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김영룡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태량  
 입법차장 민동기

【보고사항】

○의안 제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2 주호영·김정권·엄호성·박세환·이영호·안상수·신상진·이인기·이계경·박재완·고조홍·임태희·김태환·김재경·주성영·김정훈·김충환·이상배·김양수·박형준·김광원·김형오·서상기·박찬숙·이해봉·김성조 의원 발의)

11월 2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2 이상배 · 안홍준 · 한광원 · 박순자 · 김광원 · 김양수 · 정갑윤 · 박찬숙 · 안택수 · 임인배 · 이계진 · 박형준 · 김병호 · 김태환 의원 발의)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2 박찬숙 · 이혜훈 · 황진하 · 장윤석 · 김정권 · 이인기 · 주호영 · 엄호성 · 안명옥 · 이상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2 박찬숙 · 김정권 · 이인기 · 주호영 · 안택수 · 공성진 · 안명옥 · 양승조 · 이상배 · 김충환 의원 발의)

11월 23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2 장복심 · 안명옥 · 우제창 · 박상돈 · 이광철 · 노영민 · 백원우 · 노웅래 · 김동철 · 주승용 · 김낙순 · 박순자 · 이석현 의원 발의)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2 장향숙 · 이은영 · 장복심 · 이미경 · 김재윤 · 정성호 · 노현송 · 이광철 · 김낙순 · 우원식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2 이상경 · 안명옥 · 안민석 · 김태년 · 양승조 · 노영민 · 황우여 · 권선택 · 최규식 · 윤호중 · 이광철 · 이영호 · 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11. 22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2 안택수 · 이상배 · 박찬숙 · 김태환 · 최인기 · 안명옥 · 최구식 · 최병국 · 이명규 · 김석준 의원 발의)

11월 23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07. 11. 22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07. 11. 22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

(이상 8건 2007. 11. 22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

[2007. 11. 22 각 소관 상임위원장(정보위원회 제외) 제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2007. 11. 23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 11. 23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11. 23 국방위원장 제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11. 23 정무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6 정부 제출)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07. 11. 6 정부 제출)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06. 12. 29 정부 제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2007. 1. 12 임종인 · 김현미 · 노웅래 · 박찬석 · 이상경 · 이상민 · 이인영 · 강창일 · 정청래 · 제종길 · 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0 선병렬 · 문석호 · 안영근 · 염동연 · 유인태 · 강혜숙 · 김현미 · 정청래 · 서재관 · 신학용 · 양승조 · 전병헌 · 최철국 · 김교홍 · 박기춘 · 장경수 · 노웅래 · 이경숙 · 이은영 · 이근식 · 민병두 · 이상민 · 임종인 · 노회찬 · 박세환 · 나경원 · 유재건 · 장복심 · 송영길 · 우제창 · 이미경 의원 발의)

###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1 정부 제출)

### 인신보호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 31 나경원 · 고경화 · 고진화 · 광성문 · 김영춘 · 김원웅 · 김정훈 · 김태년 · 김태환 · 김희정 · 박세환 · 박순자 · 박재완 · 박진 · 박창달 · 서재관 · 손봉숙 · 신학용 · 안상수 · 안택수 · 양형일 · 엄호성 · 오제세 · 우제창 · 유기준 · 유정복 · 윤건영 · 이계경 · 이계진 · 이규택 · 이근식 · 이상경 · 이상득 · 이상열 · 이운성 · 이해봉 · 이해훈 · 임태희 · 장운석 · 전여옥 · 정두언 · 정병국 · 정중복 · 정화원 · 진영 · 최경환 · 최구식 · 홍준표 · 황우여 의원 발의)

###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6. 3. 30 나경원 · 엄호성 · 박세환 · 박재완 · 주호영 · 임태희 · 이명규 · 배일도 · 김정훈 · 정두언 · 김명주 · 장운석 · 강길부 · 김재경 · 황우여 · 이계경 · 유승민 의원 발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6. 12 선병렬 · 배기선 · 이화영 · 이인영 · 박영선 · 김우남 · 한광원 · 노영민 · 홍미영 · 김춘진 · 이영호 · 이상경 · 조성래 · 박찬석 · 장항숙 · 우원식 · 정봉주 · 조경태 · 최규성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2005. 8. 30 정부 제출)

### 非訟事件節次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발의)

(2007. 7. 18 김성조 의원 외 11인 발의)

###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2006. 3. 20 염동연 · 김낙순 · 김동철 · 김태년 · 김태홍 · 박기춘 · 박상돈 · 안병엽 · 이시종 · 임종석 · 오제세 · 우제항 의원 발의)

###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5. 5. 25 노회찬 · 권영길 · 강기갑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2005. 6. 13 이해봉 · 주호영 · 이인기 · 김재원 · 류근찬 · 박재완 · 김태환 · 공성진 · 이운성 · 김석준 · 배일도 · 이명규 · 김희정 의원 발의)

###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5. 6. 13 이낙연 · 김영선 · 김태환 · 김홍일 · 박재완 · 손봉숙 · 이상열 · 이승희 · 정화원 · 주호영 · 최인기 의원 외 1인 발의)

###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5. 5. 19 이성권 · 광성문 · 이주호 · 안홍준 · 박승환 · 김석준 · 남경필 · 권철현 · 김명주 · 권영세 · 박형준 · 원희룡 · 이계경 · 정병국 · 정문헌 · 김병호 의원 발의)

###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5. 6. 9 심재철 · 김재경 · 김재원 · 장운석 · 박재완 · 김충환 · 전여옥 · 안상수 · 심재엽 · 허천 · 신상진 · 김용갑 · 박찬숙 의원 발의)

###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5. 8. 26 안상수 · 전여옥 · 박세환 · 유승민 · 이인기 · 박재완 · 엄호성 · 이해봉 · 김재원 · 신상진 · 허태열 의원 발의)

### 赦免法 전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

(2007. 8. 2 전여옥 의원 외 10인 발의)

###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7. 14 이성권 · 김석준 · 이계경 · 박형준 · 권철현 · 김양수 · 김명주 · 정진석 · 남경필 · 정화원 의원 발의)

###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1 이성구 · 김기현 · 이해봉 · 신상

진 · 이인기 · 박상돈 · 정성호 · 박재완 · 정의화 · 김학송 · 최구식 · 이명규 의원 발의)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9. 15 문병호 · 장향숙 · 정화원 · 박재완 · 김태홍 · 한광원 · 안영근 · 서갑원 · 심재덕 · 우제창 · 이경숙 · 김재홍 · 이종걸 · 노현송 · 강창일 · 이상민 · 김동철 · 신상진 · 김영춘 · 정청래 · 안병엽 의원 발의)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6. 7. 14 손봉숙 · 박세환 · 안명옥 · 강혜숙 · 정동채 · 엄호성 · 이해봉 · 이낙연 · 노현송 · 심재철 · 이광철 · 황우여 · 박상돈 · 최순영 · 이재오 · 정화원 · 김춘진 · 임종인 · 이계경 · 강기정 · 홍미영 · 이상열 의원 발의)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

(2007. 4. 26 정부 제출)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

(2005. 8. 16 이근식 · 김현미 · 심재덕 · 유승민 · 이재오 · 고조홍 · 안병엽 · 박재완 · 심재철 · 안상수 · 이시중 · 손봉숙 · 배일도 · 김원웅 · 이상경 · 신학용 · 박상돈 · 오제세 · 노현송 · 엄호성 · 서재관 의원 발의)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9 이종걸 · 윤호중 · 최성 · 박상돈 · 변재일 · 이해봉 · 이영호 · 이상민 · 김종률 · 이인기 · 서재관 · 황우여 · 안상수 · 김영춘 의원 발의)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 김영주 · 선병렬 · 김종률 · 오영식 · 노영민 · 우윤근 · 한병도 · 제종길 · 한광원 · 임종석 · 조경태 · 김혁규 · 신학용 · 윤원호 의원 발의)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 이계경 · 김석준 · 박계동 · 이성구 · 이상배 · 이성권 · 최철국 · 차명진 · 심재덕 · 김재경 의원 발의)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1 정부 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9. 15 문병호 · 장향숙 · 정화원 · 박재완 · 김태홍 · 한광원 · 안영근 · 서갑원 · 심재덕 · 우제창 · 이경숙 · 김재홍 · 이종걸 · 노현송 · 강창일 · 이상민 · 김동철 · 신상진 · 김영춘 · 정청래 · 안병엽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6. 9. 14 이성구 · 박상돈 · 정동채 · 이계경 · 김학송 · 정화원 · 김종률 · 이성권 · 서병수 · 황우여 · 엄호성 · 이경제 · 신상진 · 최경환 · 박재완 의원 발의)

**民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홍준 · 안상수 · 김영덕 · 권경석 · 정갑윤 · 박형준 · 박상돈 · 이강두 · 김양수 · 김정부 · 최구식 · 신상진 · 이영호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5. 22 이계경 · 김효석 · 박명광 · 김정훈 · 엄호성 · 주성영 · 김석준 · 이성권 · 정화원 · 안명옥 · 김태환 · 이상배 · 황우여 의원 발의)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6. 6. 7 노회찬 · 강기갑 · 권영길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양승조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9. 15 문병호 · 장향숙 · 정화원 · 박재완 · 김태홍 · 한광원 · 안영근 · 서갑원 · 심재덕 · 우제창 · 이경숙 · 김재홍 · 이종걸 · 노현송 · 강창일 · 이상민 · 김동철 · 신상진 · 김영춘 · 정청래 · 안병엽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 이상민 · 권선택 · 김동철 · 김재윤 · 노영민 · 문병호 · 민병두 · 선병렬 · 우원식 · 유선호 · 유승희 · 임종인 · 제종길 · 최재천 · 한병도 의원 발의)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8. 17 문병호 · 구노회 · 장향숙 · 김선미 · 김교홍 · 강기정 · 신학용 · 김춘진 · 김동철 · 강창일 의원 발의)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6. 4. 17 최구식 · 안상수 · 김재원 · 이강두 · 이계경 · 임인배 · 안홍준 · 김정훈 · 권경석 · 김학송 · 엄호성 · 배일도 · 황우여 · 이재웅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6. 9. 26 이종걸 · 김동철 · 류근찬 · 김낙순 · 변재일 · 이석현 · 윤호중 · 김선미 · 이승희 · 김영주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2007. 4. 17 맹형규 · 김양수 · 이계경 · 정문현 · 황우여 · 유승민 · 황진하 · 광성문 · 안택수 · 신상진 · 김명주 · 이원복 · 정두언 · 이재창 · 김재원 · 정의화 · 김정권 · 이강두 · 배일도 · 이경재 · 정갑윤 · 박순자 · 김영숙 · 안홍준 · 제종길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4. 27 신명 · 이경재 · 선병렬 · 김영주 · 김덕규 · 김재윤 · 김태년 · 이은영 · 이영호 · 정봉주 · 노영민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6. 9. 19 정화원 · 김재홍 · 김우남 · 정동채 · 이강두 · 정종복 · 김명주 · 이계경 · 이성구 · 배일도 · 박세환 · 서병수 · 이인기 · 김태년 · 이경재 · 황우여 · 신상진 · 주성영 · 박상돈 · 박재완 · 백원우 · 정성호 · 박찬숙 · 서재관 · 이계진 · 임해규 의원 발의)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 12 전여옥 · 엄호성 · 이주호 · 박성범 · 진수희 · 김영숙 · 허태열 · 박세환 · 한화갑 · 권영세 · 이인기 · 류근찬 · 이혜훈 · 김정훈 의원 발의)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7. 6. 21 이상민 · 장향숙 · 강창일 · 홍미영 · 우원식 · 지병문 · 정의용 · 최규성 · 김재경 · 조성래 · 정청래 · 우윤근 · 박영선 · 김선미 · 이혜훈 · 나경원 · 조성태 · 노영민 · 선병렬 · 제종길 · 권선택 의원 발의)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7 장윤석 · 정병국 · 이혜훈 · 한선교 · 안홍준 · 정종복 · 최구식 · 박승환 · 이균현 · 서상기 · 이종구 · 김충환 · 신상진 · 정희수 · 박형준 · 임인배 · 이계진 · 박찬숙 · 김재경 · 김정권 의원 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7. 6. 25 이상민 · 장향숙 · 강창일 · 홍미영 · 우원식 · 지병문 · 정의용 · 최규성 · 김재경 · 조성래 · 정청래 · 우윤근 · 박영선 · 김선미 · 이혜훈 · 나경원 · 조성태 · 노영민 · 선병렬 의원 발의)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 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7. 11. 14 김효석 · 천영세 · 김영춘 의원 외 148인 발의)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

(2007. 11. 15 안상수 의원 외 128인 발의)

(이상 3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8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5 정부 제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7. 9. 18 이시종 · 노영민 · 한광원 · 박성범 · 안홍준 · 김양수 · 김명주 · 최철국 · 김덕규 · 신중식 · 김부겸 · 이성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정무위원장 보고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4 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균현 · 한선교 의원 발의)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4 이성권 · 권철현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주호 · 진수희 · 한선교 의원 발의)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3 이성권 · 광성문 · 권철현 · 김석준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인기 · 이주호 · 진수희 의원 발의)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清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7 김양수 · 이성권 · 광성문 · 차명진 · 이주호 · 한선교 · 최구식 · 엄호성 · 이재오 · 박형준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15 정부 제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2006. 11. 21 정부 제출)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6. 9. 15 이혜훈 · 박재완 · 유기준 · 유승민 · 고진화 · 배일도 · 이계경 · 엄호성 · 정문현 · 김정훈 · 최경환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7. 7. 19 오제세 · 이종걸 · 이광철 · 송영길 · 김태년 · 변재일 · 이미경 · 박상돈 · 고희선 · 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7. 5. 25 오제세 · 안명옥 · 문석호 · 박상돈 · 김종률 · 강길부 · 김명자 · 유승희 · 이목희 · 이상열 · 류근찬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06. 8. 29 최경환 · 우제창 · 유승민 · 박종근 · 임태희 · 이인기 · 김태환 · 김광원 · 이상배 · 김석준 · 엄호성 · 이혜훈 · 서병수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4. 11 선병렬 · 최철국 · 양승조 · 김명자 · 백원우 · 이경숙 · 김재윤 · 김태년 · 강혜숙 · 장복심 · 강기정 · 홍미영 · 한광원 · 장향숙 · 유필우 · 정의용 · 송영길 · 심재덕 · 김종률 · 강성중 · 김덕규 · 조경태 · 노영민 · 김춘진 · 김우남 · 배기선 · 박기춘 · 박병석 · 김재홍 · 김영주 · 신명 · 문학진 · 강길부 · 이광철 · 지병문 · 이상호 · 이목희 · 문병호 · 원혜영 · 최규성 · 권선택 · 김영춘 · 강창일 · 서갑

원 · 윤호중 · 이인영 · 서혜석 · 박영선 · 조정식 · 김형주 · 유인태 · 박찬석 · 문희상 · 이화영 의원 발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0 신학용 · 이목희 · 이승희 · 이계안 · 이인기 · 한광원 · 김혁규 · 김형주 · 김태년 · 문학진 · 서혜석 · 오제세 · 김동철 · 최재천 · 이은영 · 김우남 · 제종길 · 노웅래 · 박명광 · 정의용 · 김영주 · 유승민 의원 발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7. 1. 25 이종걸 · 윤호중 · 박세환 · 최성 · 박상돈 · 김태년 · 변재일 · 양승조 · 이석현 · 이영호 · 김낙순 · 정청래 의원 발의)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

(2007. 1. 15 정부 제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0 정성호 · 이미경 · 김선미 · 한명숙 · 정청래 · 이근식 · 김태년 · 김성곤 · 김형주 · 강창일 · 우제창 · 이낙연 의원 발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6. 1. 27 심상정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강기갑 · 이영순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임종인 의원 발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6. 6. 14 엄호성 · 심재엽 · 이방호 · 이계진 · 정병국 · 박재완 · 이근현 · 김명주 · 김재원 · 김태환 · 장윤석 · 박순자 의원 발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5. 6. 2 이혜훈 · 심상정 · 노회찬 · 권영길 · 조승수 · 엄호성 · 안경률 · 김정훈 · 안상수 · 이주호 · 김충환 · 주호영 · 유승민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이한구 · 유승민 · 엄호성 · 김정훈 · 김재원 · 이혜훈 · 주성영 · 이인기 · 김양수 · 안택수 · 송영선 · 나경원 · 김정부 · 남경필 · 박병석 · 윤건영 · 우제창 · 김애실 의원 발

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이경재 · 이운성 · 황우여 · 배일도 · 정두언 · 신상진 · 공성진 · 권철현 · 고조흥 · 정의화 · 이종구 · 박성범 · 이강두 · 김용갑 · 김영선 · 김덕용 · 이재창 · 안명옥 · 유정복 · 한선교 · 안상수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2006. 5. 10 유필우 · 이호웅 · 한광원 · 송영길 · 안영근 · 문병호 · 최용규 · 신학용 · 김교홍 · 홍미영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7. 3. 28 이한구 · 주성영 · 이상배 · 유승민 · 김석준 · 강제섭 · 박종근 · 장윤석 · 정희수 · 정종복 · 주호영 · 이인기 · 이명규 · 최정환 · 우제창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06. 12. 18 정부 제출)

(이상 1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3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희 의원 대표발의)

(2007. 3. 15 이용희 · 강창일 · 박기춘 · 조성래 · 정진석 · 김춘진 · 이시중 · 김동철 · 윤원호 · 김선미 · 홍재형 · 선병렬 · 양승조 · 최규식 · 양형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  
원 대표발의)

(2005. 4. 15 박상돈 · 권선택 · 손봉숙 · 심재덕 · 윤호중 · 이해봉 · 장경수 · 장복심 · 정장선 · 주승용 · 지병문 · 최인기 의원 발의)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  
원 대표발의)

(2006. 2. 8 장복심 · 김동철 · 우윤근 · 김태년 · 이시중 · 한광원 · 박상돈 · 정갑윤 · 강길부 · 선병렬 · 노현송 · 신학용 · 한병도 · 김정훈 · 정세균 · 김영주 · 노영민 의원 발의)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  
원 대표발의)

(2006. 10. 23 손봉숙 · 김낙성 · 김낙순 · 김효석 · 노현송 · 류근찬 · 신중식 · 양형일 · 이낙연 · 최인기 · 홍미영 의원 발의)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 의  
원 대표발의)

(2006. 12. 7 김낙순 · 박기춘 · 염동연 · 강창일 · 양형일 · 강길부 · 문학진 · 장향숙 · 우윤근 · 이석현 · 손봉숙 · 강기정 · 이인영 · 이기우 · 박명광 · 이종걸 · 임종석 · 심재덕 · 원혜영 · 김희선 · 김효석 · 유재건 · 노현송 · 김부겸 의원 발의)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3 정부 제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  
원 대표발의)

(2007. 1. 26 한선교 · 김정훈 · 이계경 · 최성 · 박상돈 · 엄호성 · 박성범 · 장복심 · 권경석 · 안명옥 · 이영순 · 이혜훈 · 강기갑 · 최순영 · 노회찬 · 단병호 · 천영세 · 심상정 · 권영길 · 손봉숙 · 김애실 · 이경숙 · 현애자 · 김희선 의원 발의)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4. 7. 19 박찬숙 · 김우남 · 정성호 · 안택수 · 이영호 · 강제섭 · 강혜숙 · 심재덕 · 김재원 · 류근찬 · 유정복 · 정종복 · 노현송 · 이상득 · 이인기 · 전병헌 · 구노희 · 선병렬 · 김석준 · 김태환 · 유승민 · 황우여 · 주성영 · 이재오 · 이계경 · 진수희 의원 발의)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  
의)

(2005. 4. 19 박상돈 · 권선택 · 심재덕 · 윤호중 · 이해봉 · 장경수 · 장복심 · 정장선 · 주승용 · 지병문 · 최인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06. 8. 21 강창일 · 우제창 · 김부겸 · 양형일 · 우제항 · 최인기 · 김춘진 · 심재덕 · 김재운 · 강기정 · 임종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4. 18 정부 제출)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2006. 9. 12 최규식 · 안병엽 · 강창일 · 노현송 · 서재관 · 우윤근 · 양형일 · 홍미영 · 강기정 · 장복심 · 조성래 · 이은영 · 우제항 · 박기

춘 의원 발의)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 발의)

(2006. 12. 12 이성구 · 김학송 · 이석현 · 고조흥 · 공성진 · 송영선 · 광성문 · 김기현 · 문희 · 심재철 · 박재완 · 박찬숙 · 이명규 · 김태환 · 김송자 · 정화원 의원 발의)

(이상 1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27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군인복지기본법안**(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2007. 6. 25 김명자 · 강길부 · 강봉균 · 강성종 · 강혜숙 · 고조흥 · 고흥길 · 공성진 · 권철현 · 김교홍 · 김덕규 · 김덕룡 · 김부겸 · 김성곤 · 김성조 · 김영주 · 김용갑 · 김원기 · 김재윤 · 김진표 · 김춘진 · 김충환 · 김태년 · 김학송 · 김혁규 · 김현미 · 김형주 · 김희정 · 나경원 · 노영민 · 맹형규 · 문병호 · 문석호 · 문희상 ·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순자 · 박영선 · 박재완 · 박진 · 박찬석 · 박찬숙 · 배기선 · 배일도 · 백원우 · 서갑원 · 서병수 · 서상기 · 서재관 · 서혜석 · 송영길 · 송영선 · 신명 · 신상진 · 신중식 · 신학용 · 심대평 · 심재덕 · 안명옥 · 안민석 · 안상수 · 안영근 · 안택수 · 양승조 · 엄호성 · 엄동연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윤근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선호 · 유승희 · 유시민 · 유인태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경숙 · 이경제 · 이계진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 이기우 · 이상경 · 이상배 · 이상열 · 이시중 · 이원복 · 이원영 · 이인기 · 이인제 · 이재오 · 이종걸 · 이화영 · 임종석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전재희 · 정동채 · 정문헌 · 정봉주 · 정성호 · 정세균 · 정의용 · 정의화 · 정장선 · 정진석 · 정청래 · 정형근 · 제종길 · 조성태 · 조일현 · 주승용 · 주호영 · 진영 · 채수찬 · 최경환 · 최연희 · 최용규 · 최재천 · 최철국 · 한병도 · 허천 · 홍문표 · 홍미영 · 홍창선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7. 5 이성구 · 김명자 · 고조흥 · 김송자 · 신상진 · 김정권 · 엄호성 · 황진하 · 전재희 · 김태년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2007. 8. 6 맹형규 · 김양수 · 안상수 · 신상진 · 이성권 · 이경제 · 박찬숙 · 김명주 · 이인기 · 이성구 · 김충환 · 권영세 · 유재건 · 황진하 · 김명자 · 김정권 · 공성진 · 이계경 · 김학송 · 정두언 · 김성곤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국방위원장 보고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2 구논회 · 주승용 · 강기정 · 권선택 · 이미경 · 김태홍 · 선병렬 · 정봉주 · 지병문 · 백원우 · 이강래 · 신기남 · 조배숙 의원 발의)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5 정봉주 · 이인영 · 최재성 · 백원우 · 김효석 · 조배숙 · 구논회 · 지병문 · 김영주 · 김홍일 · 최순영 · 우상호 · 오영식 · 이미경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7. 5. 21 이주호 · 이성구 · 김정권 · 이인기 · 이원복 · 정문헌 · 신상진 · 박재완 · 주호영 · 이계경 의원 발의)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4. 28 이계경 · 이인기 · 김석준 · 장윤석 · 박재완 · 김무성 · 이해봉 · 엄호성 · 이성권 · 김정훈 · 문희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2007. 4. 13 김영숙 · 안홍준 · 임인배 · 임혜규 · 김애실 · 안명옥 · 김희정 · 김성조 · 진수희 · 정종복 · 박찬숙 · 권경석 · 허천 · 황진하 · 배일도 · 이주호 · 김명주 · 신상진 · 정동채 · 이성구 · 이규택 · 김재윤 · 엄호성 · 이해봉 · 정의화 · 이인기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7. 5. 1 김교홍 · 이광철 · 신학용 · 이경숙 · 최성 · 정봉주 · 황우여 · 정성호 · 안민석 · 민병두 · 최순영 · 이은영 · 노현송 · 김재윤 · 김태년 · 한광원 · 김영숙 · 정장선 · 이계경 · 최재성 · 유기홍 · 고조홍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7. 2. 8 이경숙 · 김재윤 · 김춘진 · 민병두 · 안민석 · 유기홍 · 이미경 · 이은영 · 이인영 · 정봉주 · 정장선 · 최규성 의원 발의)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 21 이주호 · 고진화 · 권오을 · 김맹곤 · 김애실 · 김충환 · 김형주 · 김희정 · 맹형규 · 박계동 · 박성범 · 박순자 · 배기선 · 배일도 · 양형일 · 엄호성 · 오시덕 · 원희룡 · 윤건영 · 이계경 · 이군현 · 이근식 · 이승희 · 이인기 · 이해봉 · 정두언 · 정몽준 · 정병국 · 정성호 · 정장선 · 정화원 · 진영 · 진수희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2007. 5. 17 이군현 · 김명주 · 임인배 · 이성구 · 정종복 · 나경원 · 신상진 · 박찬숙 · 공성진 · 정두언 · 김영덕 · 김재경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7 정부 제출)

(이상 1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교육위원장 보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07. 3. 21 우상호 · 이미경 · 윤원호 · 송영길 · 이광철 · 이인영 · 김영주 · 정청래 · 강혜숙 · 김희선 · 전병헌 · 박찬석 · 윤호중 · 김재윤 · 최재성 · 백원우 · 임종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10. 26 정부 제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07. 9. 28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 ·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7. 8. 31 정부 제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2007. 9. 10 조성래 · 강창일 · 양형일 · 제종길 · 홍미영 · 안홍준 · 윤원호 · 이목희 · 우원식 · 장향숙 · 배일도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6 정부 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8. 21 정부 제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8. 10 정부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7. 9 정부 제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6. 29 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제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6. 4 정부 제출)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環境 · 交通 · 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7 김태환 · 김종률 · 박재완 · 신상진 · 안상수 · 유승민 · 이인기 · 임인배 · 정희수 · 주성영 · 한선교 · 황우여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7 김양수 · 이성권 · 김희정 · 박형준 · 권철현 · 남경필 · 김명주 · 이주호 · 한선교 · 최구식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6. 29 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노웅래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8. 10 정부 제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최용규 · 제종길 · 김영주 · 우원식 · 김종률 · 이강래 · 조성래 · 강봉균 · 이영호 · 박기춘 · 주승용 · 조일현 · 양승조 · 강기정 · 이상민 · 오영식 · 선병렬 · 노웅래 · 최성 · 김현미 · 정성호 · 김선미 · 김춘진 · 오제세 · 박명광 · 박영선 · 정덕구 · 문병호 · 우제창 · 정청래 · 윤호중 · 김성곤 · 신기남 · 조배숙 · 장향숙 · 김태홍 · 장복심 · 김낙순 · 우윤근 · 이은영 · 민병두 · 이기우 · 한병도 · 정장선 · 김교홍 · 이미경 · 조정식 · 김형주 · 문학진 · 장영달 · 윤원호 · 홍창선 · 전병헌 · 서혜석 · 유재건 · 이상경 · 송영길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007. 4. 23 안경률 · 김정권 · 김정훈 · 김태년 · 나경원 · 박승환 · 박형준 · 배일도 · 손봉숙 · 신상진 · 안명옥 · 이규택 · 이상배 · 이성권 · 이인기 · 이재오 · 정화원 · 엄호성 · 진수희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5. 29 이성구 · 황진하 · 박재완 · 신상진 · 공성진 · 고조홍 · 박계동 · 맹형규 · 송영선 · 엄호성 · 이근현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7. 6. 7 제종길 · 민병두 · 김명주 · 신상진 · 노현송 · 안상수 · 박상돈 · 김선미 · 정동채 · 이계경 · 이목희 · 장향숙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7. 6. 11 정화원 · 김정권 · 이계안 · 이주호 · 최구식 · 김희정 · 김명주 · 서상기 · 나경원 · 황진하 · 안명옥 · 박순자 · 공성진 · 임인배 · 정갑윤 · 유정복 · 안택수 · 김용갑 · 배일도 · 이재창 · 정병국 · 김춘진 · 안상수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6. 29 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유재건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8 한선교 · 이성권 · 박형준 · 신상진 · 이명규 · 김정훈 · 유승민 · 최경환 · 엄호성 · 김양수 의원 발의)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

(2005. 6. 16 전여옥 의원 외 14인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6. 29 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정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8. 10 정부 제출)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6. 12 선병렬 · 송영길 · 신명 · 배기선 · 이화영 · 이인영 · 박영선 · 김우남 · 한광원 · 노영민 · 홍미영 · 김춘진 · 이영호 · 이상경 · 조성래 · 박찬석 · 장향숙 · 정봉주 · 최규성 · 이경숙 의원 발의)

####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4. 11. 8 김춘진 · 정두언 · 안민석 · 안상수 · 심재덕 · 우원식 · 김애실 · 신기남 · 김태홍 · 한화갑 · 정청래 · 이상락 · 안명옥 · 우제창 · 김덕규 · 황우여 · 임종석 · 정성호 · 염동연 · 원혜영 · 유정복 · 진수희 · 박재완 · 김명자 · 최재성 · 장향숙 · 엄호성 · 이재오 · 김원웅 · 손봉숙 의원 발의)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5. 4. 14 진수희 · 박세환 · 전여옥 · 김원웅 · 김재경 · 박형준 · 김춘진 · 이운성 · 유정복 · 박찬숙 · 김학송 · 엄호성 · 고경화 · 이인기 · 김명주 · 유승희 · 이경숙 · 정병국 · 이혜훈 · 전병헌 · 김애실 · 이화영 · 황우여 · 맹형규 · 권오을 의원 발의)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한선교 · 김정훈 · 유승민 · 이성권 · 최경환 · 권철현 · 김양수 · 이명규 · 박형준 · 조성래 의원 발의)

####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발의)

(2004. 6. 18 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

(2006. 10. 31 김형주 · 강기정 · 김영주 · 김재홍 · 김종률 · 김태년 · 김희정 · 문학진 · 박기춘 · 박명광 · 서갑원 · 안병엽 · 염동연 · 우원식 · 우제창 · 유기홍 · 이광철 · 이성권 · 이원영 · 이인영 · 장복심 · 정동채 · 정성호 · 조정식 의원 발의)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6. 9. 26 양승조 · 황우여 · 심재덕 · 안명옥 · 안상수 · 김효석 · 김종률 · 엄호성 · 이계경 · 김재홍 · 박찬숙 · 이은영 · 이해봉 · 박명광 · 박상돈 · 김태년 · 노현송 · 주호영 · 서재관 · 김동철 · 정성호 · 강혜숙 의원 발의)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6. 29 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향숙 · 선병렬 · 이은영 · 노웅래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정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오영식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17 정부 제출)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7. 5. 28 이성권 · 김명주 · 김정권 · 김태년 · 박형준 · 안명옥 · 안택수 · 엄호성 · 이계경 · 이시종 · 이인기 · 정병국 · 정성호 · 진수희 의원 발의)

####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1 조정식 · 김부겸 · 고진화 · 한병도 · 우원식 · 장복심 · 김형주 · 이목희 · 김태년 · 서갑원 · 김영주 · 제종길 · 단병호 의원 발의)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13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제 의

원 대표발의)

(2006. 8. 30 이경재 · 신상진 · 신중식 · 유승민 · 김동철 · 엄호성 · 정문현 · 조성래 · 이성권 · 배일도 · 정성호 · 김무성 · 이해봉 · 고조홍 · 안상수 · 박재완 의원 발의)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1 장복심 · 김동철 · 노현송 · 김영춘 · 김재홍 · 박상돈 · 백원우 · 심재덕 · 한광원 · 김혁규 · 박찬석 · 이시중 · 우윤근 · 장향숙 · 신중식 · 김낙성 · 주승용 · 최철국 · 정청래 · 이낙연 · 이인제 · 윤호중 · 변재일 · 안민석 · 유승희 · 양승조 · 김명자 · 최인기 · 문학진 · 김형주 · 우제창 · 강기정 · 이근식 · 염동연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6. 1 정부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5. 29 이성구 · 황진하 · 박재완 · 신상진 · 공성진 · 고조홍 · 박계동 · 맹형규 · 송영선 · 엄호성 의원 발의)

(이상 3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7. 1. 22 김기현 · 황우여 · 이영호 · 박순자 · 이계경 · 김학원 · 진영 · 광성문 · 이성권 · 김태환 · 김영숙 의원 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박영선 · 강기정 · 강창일 · 김낙순 · 김명자 · 김영주 · 김재윤 · 김형주 · 김현미 · 김희선 · 김효석 · 문희상 · 민병두 · 박기춘 · 박상돈 · 송영길 · 양승조 · 이경숙 · 이기우 · 이목희 · 이미경이은영 · 이인영 · 이종걸 · 우윤근 · 유승희 · 윤원호 · 윤호중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전병헌 · 정성호 · 최규식 · 홍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2007. 11. 22 서울 강남구 개포2동 169-1 삼원주택 102호 류정순 외 9만 1085인으로부터 신학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개정에 관한 청원**

(2007. 11. 22 대전 서구 탄방동 주공아파트 115동 406호 이천희 외 69인으로부터 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법무사법 등 개정안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